#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99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문금주・이기헌・김문수

조계원 · 이광희 · 양부남

유준병 • 문대림 • 최민희

조인철 · 임호선 · 이병진

이워택 · 정일영 · 정진욱

송재봉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발행·유통되고 있던 지역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함)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 2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개정으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허용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간 매출액이 30 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체의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도시에 비해 사용처가 많지 않은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상품권 사용처가 제한되어 그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

이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의 감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식품사막화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품권 가맹점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읍·면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한한다)에 대하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생	제7조(가맹점의 등록) ① (현행과		
략)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	2		
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u>&lt;단서 신설&gt;</u>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		
	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가 읍•면 지역에 소재한 사업		
	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영위		
	하는 사업장에 한한다)에 대하		
	여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